#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 349 제출년월일 : 2021. 4.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
나. 적용범위, 책무 등 (안 제3조~안 제4조)

다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, 사업추진 및 지원(안 제5조~안 제6조)

라. 지원센터, 추진위원회(안 제7조~안 제8조)

마. 표창, 준용(안 제9조~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21. 3. 18. ~ 2021. 4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반영

##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문화도시"란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평창군수 (이하 "군수"라 한다)의 지정 신청으로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4조(책무 등)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 적·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 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  - 1. 군의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계획의 수립에서 제 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
  - 2. 제1호에 따른 주요계획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, 도시재생 촉진.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

위하여 노력

- ② 모든 군민과 문화도시 관련 군 소재 법인·단체 등(이하 "법인·단체 등"이라 한다)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,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해야 한다.
- 제5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)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·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기본목표 및 방향
  - 2. 문화도시 조성사업(이하 "조성사업"이라 한다)의 추진 및 지원범위
  - 3. 추진조직 및 문화네트워크의 구축 · 운영
  - 4.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
  - 5.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, 법인·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- **제6조(사업추진 및 지원)**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지역문화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- 가. 균형발전 및 특성화
- 나. 진흥 및 기반조성
- 다. 필요한 전문 인력(청년활동가, 전문가 등을 말한다)의 양성
- 라.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육성
- 마.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· 창업활동
- 2.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3. 국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 운영
- 4. 교육 및 홍보
- 5.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②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센터)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적 수립 및 시행
  - 2. 조성사업의 추진
  - 3. 선진지 답사 및 반영
  - 4.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
  - 5.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- ② 센터에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에 관한 정원, 채용, 복무, 보수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8조(추진위원회)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(이하 "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
  - 2.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
  - 3. 포럼, 초청강연, 학술세미나, 토론회 등 개최방안
  - 4. 센터의 설치 및 운영
  - 5.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 - 2.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도시 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, 문화관 광과장으로 한다. 이 경우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

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- 가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나. 전문가 및 활동가
- 다. 유관기관 및 법인 · 단체 등의 관계자.
- 라.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- 마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9조(표창) 군수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, 법인·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.
- 제10조(준용)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회의 운영,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·여비등 지급,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」, 「평창군포상조례」등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"문화도시"란 문화예술、문화산업、관광、전통、역사、영상 등 지역 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.

제6조(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 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、시행、평가하여야 한다.

- 1.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
- 3.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4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- 5.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
- 6.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7.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사항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 · 시행 · 평가하여야 한다.

제15조(문화도시의 지정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、문화산업、관광、전통、역사、영상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·역사적 정체성, 창조성,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·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

- 2.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
- 3.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- 4.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 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.
-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,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,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6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지역문화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   - 가. 균형발전 및 특성화
    - 나. 진흥 및 기반조성
    - 다. 필요한 전문 인력(청년활동가, 전문가 등을 말한다)의 양성
    - 라.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육성
    - 마.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·창업활동
  - 2.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 - 3. 국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 · 운영
  - 4. 교육 및 홍보
  - 5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센터)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 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적 수립 및 시행
  - 2. 조성사업의 추진
  - 3. 선진지 답사 및 반영
  - 4.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
  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 - ② 센터에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이에 관한 정원, 채용, 복무, 보수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

따로 정한다.

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·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.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 구축·운영으로 예시도시 및 본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올림픽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결합한 도시브랜드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나. 추계 결과(연간)

구분	내 역	산출기초	예산액(천원)	비고
	합 계		20,700,000	
2022년	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	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비	200,000	군비
	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	평창군 문화도시 예1도시 사업 운영	500,000	군비
2023년	문화도시 사업 추진	평창군 문화도시 시업 운영	4,000,000	국비 50% 군비 50%
2024년	문화도시 사업 추진	평창군 문화도시 시업 운영	4,000,000	국비 50% 군비 50%
2025년	문화도시 사업 추진	평창군 문화도시 시업 운영	4,000,000	국비 50% 군비 50%
2026년	문화도시 사업 추진	평창군 문화도시 시업 운영	4,000,000	국비 50% 군비 50%
2027년	문화도시 사업 추진	평창군 문화도시 시업 운영	4,000,000	국비 50% 군비 50%

다. 재원조달 방안 : 2022년 ~ 2027년 당초예산 편성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 - 2250

# 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	입	( <b>-</b> )	(==== <b>=</b> )	(=3=3 <b>_</b> )	(==== <b>_</b> )	(=3=3 <b>_</b> )	
세 출		700,000	4,000,000	4,000,000	4,000,000	4,000,000	16,700,000
문화도시 조성 및 지 원센터 운영 (군비) 문화도시 예비도시 사 업 추진 (군비)		200,000					200,000
		500,000					500,000
문화도시 사업 추진 (국비)	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000,000
문화도시 사업 추진 (군비)	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000,000
재	원 조달						
	소 계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000,000
의존	보조금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000,000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7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700,000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	군비	7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700,000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